

# 국토교통부, 이용자 안전 위해 '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' 확대 개방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
2021.7.13.

국토교통부는 7월 12일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이 공포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\*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제외한 배치도에 한해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였으나,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통해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와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·열람이 가능해진다. 또한 감정평가를 위해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. 특히 세움터(cloud.eais.go.kr)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.

한편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「건축법」이나 관계 법령의 조사 및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, 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'건축물대장 작성방법'을 제공하고 있다.



세움터 홈페이지 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 화면  
출처: 세움터(2021, cloud.eais.go.kr, 검색일: 2021.9.2.)

\*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·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,000㎡ 이상인 건축물